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2. 14.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2. 14.

2.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와 관련 교육 훈련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와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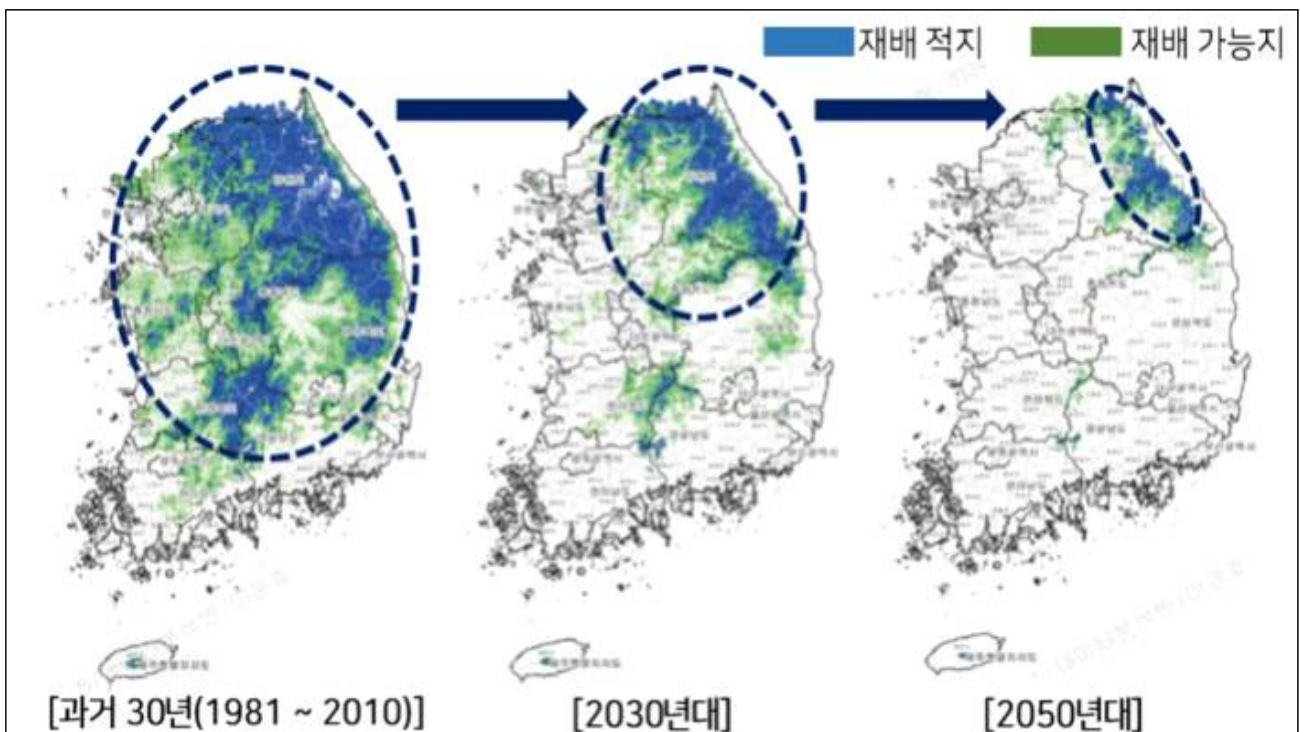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미래농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2. 05. ~ 0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역별 재배 적합한 작물의 생육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거창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사과만 해도 강원 지역의 재배면적이 최근 13년 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과의 재배지역이 지속적으로 북상하고 있음.

- 국립기상연구소(2009년)의 보고에 따르면 2050년에는 경남지역은 월평균 기온 10℃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고, 1년 중 가장 추운 달 월평균기온이 18℃ 이하인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음.
- 또한, 농촌진흥청의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 자료를 보면 2050년이 되면 거창은 더 이상 사과재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자료=농촌진흥청, 농협빅데이터플랫폼 2024.12.02.)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창에 적합한 열대·아열대 품종 개발, 거창의 주요 작물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군수는 기후 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 시 관련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코자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컨설팅 추진과 소비촉진 추진 등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최근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팜 농업의 확대와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거창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효과와 집행기관의 추진의지

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으나 기이 편성된 관련 예산들을 조례에 근거하여 알차게 집행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5. 1.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

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2.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2. 14.

2. 제안이유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함
 - 1) 위임사무 :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 2) 자치사무 :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나.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 1)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
- 2) 이용 제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 17.~2.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조례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3년 최초 제정된 조례임.

- 2016년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2020년 5월 6일 거창하천환경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추가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임사무인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치사무인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조례 제명에서 주된 내용인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는 빠져있어 본 개정안에서 제명을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제명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제6조제1항에서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용어를 약칭하려면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해야 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시설 이용료의 산정은 월성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붙임 문서)와 타 지자체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산정된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업체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면제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애인 단체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 개별법에서 이용료 할인이 규정된 단체, 그 밖에 주민복지 등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용료 반환 규정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봤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1) 숙박비 (1인1일)	청소년		6,000원
	일반		9,000원
2) 강당	공연 행사	오전	7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00,000원
3) 세미나실	행사 교육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
4) 운동장	1일	경기	50,000원
		경기외	100,000원

관 렣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7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다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2. 1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2. 14.

2.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농막을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1) 이유 :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창고로 규정됨

2)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것과 비슷한 것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26조제2항6호를 삭제하는 것은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로 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됨으로써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 본 개정조례안 제26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횡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26조제3항제1호의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붙임 참고)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연장횡수의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고자료〉

※ 3년 이내로 존치하고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설건축물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개정조례안 제26조제3항제2호에서 1호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와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였음.
-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었음.
- 3년 이내로 존치하고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설건축물은 그 성격상 3년 이내로 존치함이 타당하여 제한한 사항으로 특별히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함.
- 202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규정없이 그동안 연장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은 지적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⑩ 삭제 <2010. 2. 18.>

□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써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